

“당당하고 강한 한국세무사회!”



한국세무사회

☎ 06660 /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(서초3동 1497-16) / 홈페이지 <http://www.kacpta.or.kr>
전화 02-521-9457/팩스 597-3753 회원서비스팀 팀장 : 김성동 담당 : 백승철

문서번호 : 회원 제210-508호

시행일자 : 2020. 8. 13.

수신 : 전화원

참조 :

제목 :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「노무관리 매뉴얼」 게시 안내

직인생략

1.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(감독기관)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[상반기(4~6월), 하반기(9~11월)]에 걸쳐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‘근로감독제도’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저희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회원사무소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「노무관리 매뉴얼」을 마련하여 스마트 플랫폼 ‘세무사회 맘모스’ 회원공지 및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acpta.or.kr>)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시 준비해야 할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작성·비치하여 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임금지급	서면근로계약	최저임금
준비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에 50%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. *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계약기간, 근무장소, 업무의 내용, 소정근로시간, 휴게시간, 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일, 지불방법),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.
주요내용	임금체불 여부 확인	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여부 확인	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
관련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기준법 제36조(금품 청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 명시), 제55조(휴일), 제67조(근로계약) *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근로조건 서면 명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기준법 제43조(임금 지급) * 최저임금법 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
미준수시 처분 및 관련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* 근로기준법 제109조(벌칙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*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(과태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* 최저임금법 제28조(벌칙)

붙임 :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「노무관리 매뉴얼」 1부.(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) 끝.

한국세무사회장